『퇴직연금 정기예금』특약

제1조 약관의 적용

『퇴직연금 정기예금』(이하 "이 예금"이라 한다) 거래는 이 약관을 적용하며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예금거래기본약관』 및 『거치식예금 약관』을 적용 한다.

제2조 가입대상

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퇴직연금 사업자이다.

제3조 계약기간 및 자동 재예치

- ① 이 예금의 계약기간은 3개월, 6개월, 1년, 2년, 3년, 5년으로 한다. (이하 "일반 퇴직연금 정기예금" 이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가 원하는 경우 3개월 이상, 5년 이내에서 만기일을 자유로이 정할 수 있다.(이하 "만기지정식 퇴직연금 정기예금"이라한다.)
- ③ 일반 퇴직연금 정기예금의 만기 시, 신규일 또는 계약기간 중 예금주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최초 계약기간」단위로 자동 재예치된다.
- ④ 최초 신규시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을 위한 운용지시서 상에 자동재예치를 선택할 경우에는 이후 별도의 자동재예치 신청을 생략할 수 있다. '자동 재예치 이메일통지'를 신청한 예금주에게는 만기일(자동재예치일) 1개월 전에 자동 재예치됨을 이메일로 안내한다.
- ⑤ 만기지정식 퇴직연금 정기예금의 경우 가입자가 신규시 지정한 상품으로 재예치 한다.

제4조 가입금액

이 예금의 최저가입금액은 1원 이상으로 한다.

제5조 적용이율 및 이자계산

① 이 예금의 적용이율은 신규일 현재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된 기간별 차등 이율을 적용한다. 다만, 만기지정식 퇴직연금 정기예금의 경 우, 해당 정기예금의 계약기간 이내에 포함되는 일반 퇴직연금 정기예금 중 최장기 기간별 고시금리를 적용한다. ② 이 예금은 신규일 및 자동 재예치일을 이율결정일로 한다. 해당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직전 영업일의 이율을 해당일의 이율로 하여적용한다. 다만, 해당일이 없는 경우 그 월의 말일을 해당일로 한다.

제6조 이자지급방식

이 예금의 이자지급은 만기 일시 지급식으로 하며, 자동 재예치 시에는 최초 약정된 이자를 셈하여 원금에 더한 금액을 재예치한다.

제7조 중도해지

- ① 중도해지시는 신규일로부터 지급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제5조에 따라 이자를 지급한다. 다만, 신규일 또는 최종 재예치일로부터 지급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신규일 또는 최종 재예치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된 일반정기예금의 기간별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하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퇴직연금제도에서 인정하는 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에 의해 중도해지 하는 경우에는 신규일 또는 최종 재예치일 당시 결정된 퇴직연금정기예금의 특별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한다.
 - 1. 퇴직, 연금지급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 2.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인 경우
 - 가.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나.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6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 다. 그 밖에 천재·사변 등으로 인하여 근로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노동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 3. 사업자의 합병 또는 영업양도로 인하여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해지 요청하는 경우
 - 4. 관련 법령의 변경으로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
 - 5. 수탁자의 사임
 - 6. 위탁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파산 또는 폐업
 - 7. 개인형 개인퇴직계좌의 법정요건에 따른 특별 중도인출의 경우
 - 8. 퇴직연금제도의 동일사업자 내의 제도 전환 및 급여이전
 - 9. 수수료의 징수
- ③ 예금 만기이전의 특별중도해지 시 적용되는 특별중도 해지이율은 신규일 (재예치되었을 경우 최종 재예치일) 이후 예치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이때 약정금리라 함은 신규일 또는 최종 재예치일 기간별로 영

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된 금리를 의미한다.

- 1. 계약기간이 3월, 6월, 1년인 계약 기간별 약정금리. 다만, 만기지정형 인 경우 3개월초과 6개월 미만의 계약은 3개월, 6개월 초과 1년 미만의 계약은 6개월, 1년 초과 2년 미만의 계약은 1년을 계약기간으로 본다.
- 2. 계약기간이 2년 이상, 5년 이내인 계약
 - 2년 미만 예치시 : 1년제 퇴직연금 정기예금 약정금리
 - 2년 이상 3년 미만 예치시 : 2년제 퇴직연금 정기예금 약정금리
 - 3년 이상 예치시 : 3년제 퇴직연금 정기예금 약정금리

제8조 분할지급

- ① 이 예금은 기간 중 만기를 포함하여 3회 이내에서 분할해지가 가능하며 자동 재예치된 경우에는 각 재예치 기간 마다 만기를 포함하여 3회 이내에서 분할해지가 가능하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퇴직연금제도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을 위하여 이 예금에 가입한 경우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가입자별로 만기해지를 포함하여 3회 이내에서 분할해지가 가능하다.
- ③ 예금 신규 당일에는 분할지급 할 수 없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퇴직급여를 연금형태로 지급하기 위한 인출 및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인출 의 경우에는 분할해지 횟수에서 제외한다.

제9조 기 타

- ① 이 예금은 퇴직연금제도 범위 내에서 운용되는 상품으로 질권 설정 및 담보제공, 지급정지, 상계 등은 불가하다.
- ② 이 절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정기예금 업무에 준하여 처리한다.

부 칙(변경사항)

변경일	변경내용	관련조항
2005.12.30	중도해지이율 적용방법 변경 자동만기 연장시 분할해지 조항 추가	제7조, 제8조
2006.11.20	계약기간 추가 용어 명확화	제3조, 제5조
2008.06.25	퇴직급여 지급시 분할해지 적용횟수 제외조항 신설	제8조
2010.07.02	특별중도해지이율의 변경 특별중도해지사유의 세분화	제3조, 제7조 제9조
2010.10.27	만기지정식 퇴직연금 정기예금 신설 특별중도해지이율 적용방법 신설	제3조, 제5조 제7조
2011.11.16	자동재예치시 고객의사 확인사항 추가	제3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2013.11.15	재예치사실 고객통지 명확화 이자율 확인방법 명확화	제3조, 제5조 제7조